

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제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5년 3월 24일 (월) 오전 9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(평동) 디타워 돈의문 3층 교육장(세미나실)
(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번 출구)
※ 문의) 대표전화 : 02)2011-7114, 홈페이지 주소 : <https://www.dlenc.co.kr>

3. 회의 목적사항

《보고사항》 감사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, 영업보고

《부의안건》

- 제1호 의안 : 제4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※ 현금배당(안) : 보통주 540원(10.8%), 우선주 590원(11.8%), 2우선주(전환) 540원(10.8%)
-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첨부 참조)
- 제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※ 당기 이사 보수한도 : 30억원 (전기 이사 보수한도 30억원 / 실지급 총액 13.7억원)
- 제4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첨부 참조)
 - 제4-1호 : 사내이사 김생규 선임의 건
 - 제4-2호 : 사내이사 이정은 선임의 건

4.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- 주주님께서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본인 신분증
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인감 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※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-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,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(모바일) 주소 : <https://vote.samsungpop.com>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5년 3월 14일 ~ 2025년 3월 23일

-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(단, 첫째날은 오전 9시부터 가능,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증권용 · 범용 공동인증서 인증, 카카오 인증, PASS앱 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

2025년 3월 7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(평동)
D L 이 앤 씨 주 식 회 사
대 표 이 사 박 상 신 (직인생략)

<제2호 의안> 정관 일부 변경의 건 - 변경 전후 비교표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제5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생략)	제51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③ (좌동)	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상법 개정 내용 반영
(신설)	④ <u>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</u>	
(신설)	⑤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</u>	
(신설)	⑥ <u>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</u>	
④ <u>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	⑦ <u>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	
⑤ <u>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u>		
⑥ <u>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u>	⑧ <u>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</u>	

변경전 내용	변경후 내용	변경의 목적
⑦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	⑨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	
제58조(이익배당)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 ③ 회사가 현물배당을 하는 경우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일정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.	제58조(이익배당) ① (좌동)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,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③ (좌동)	배당절차 선진화 개선안 반영 (先배당액확정, 後배당기준일)
<신설>	부 칙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58조 개정규정은 제5기(2025년 회계년도)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.	부칙 신설 (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)

<제4호 의안> 이사 후보에 관한 사항

의안 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요 약력		회사와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	최대주주 와의 관계
		추천인	기간	내용		
제4-1호	김생규 (사내이사)	1968.05.10	2024 ~ 현재	DL이앤씨(주) CFO(Chief Financial Officer)	-	계열회사 임원
			2021 ~ 2024	(주)LF푸드 대표이사		
			2019 ~ 2021	(주)LF푸드 CFO		
		이사회	2019	(주)S&I코퍼레이션 정도경영 담당 / 상무		
			2015 ~ 2018	(주)판토스 CFO / 경영지원부부장 / 상무		
			2012 ~ 2014	(주)지투알 CFO / 상무		
제4-2호	이정은 (사내이사)	1978.08.25	2023 ~ 현재	DL이앤씨(주) CDO(Chief Design Officer)	-	계열회사 임원
		이사회	2021 ~ 2022	DL이앤씨(주) 주택사업본부 디벨로퍼사업실장		
			2017 ~ 2021	DL이앤씨(주) 주택사업본부 D-IC 실장		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 (최근 5년 이내)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(최근 5년 이내)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김생규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이정은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